#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48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이만희·권성동·구자근

김용태 • 정희용 • 권영진

서천호 · 박덕흠 · 김기웅

김선교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그간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 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 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 다. 합리적인 수급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업관측 분야에 소비·수요량 분석을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 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주산지협의체가 수립한 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바.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지사 관할구역 내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주산지협의체의 기능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 2. 주산지별 생산 및 출하 시기
- 3. 병충해 방제 등 주산지 품목 생육 및 작황 관리
- 4. 그 밖에 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 른 생산자단체에게 제1항의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 관리 계획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조사를 통한 공급측면 분석
- 2. 유통경로별 소비량 등 소비 실태 조사를 통한 수요량 분석 제9조의 제목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제9조의3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를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수급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 읔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사전 재배면적 관리
- 2.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
- 3. 출하 시기 조정 등 출하조절
- 4.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 장려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체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수급안정사업을 통 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4(수급관리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제9조의3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 산지의 시 · 도지사는 주산지의 지 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 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 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 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농수산자 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협의체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주산지협의체의 기능 등) <신 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2. 주산지별 생산 및 출하 시기 3. 병충해 방제 등 주산지 품목 생 육 및 작황 관리 4. 그 밖에 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 저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
른 생산자단체에게 제1항의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 관리 계획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
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u>있다.</u>
④ 그 밖에 수급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조(농림업관측) ①
<u>다음 각 호에</u>
해당하는
1.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
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조사를
통한 공급측면 분석
2. 유통경로별 소비량 등 소비 실
태 조사를 통한 수요량 분석

#### ② ~ ⑤ (생 략)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채소류</u>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 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기금으로 해당 <u>농산물을</u> 수 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생략)

<신 설>

(2) ~ (5) (현행과 같음)
세9조(수급 불안시의 생산자 보호) ①
<u>제</u> 9조의3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류 등 저장
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u>농산물의 수매 등 필</u>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수급안정사업)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 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사전 재배면적 관리
- 2.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

<신 설>

- 3. 출하 시기 조정 등 출하조절
- 4.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 약출하 및 계약거래 장려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체 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수급안정사업을 통 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4(수급관리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제9조의3에 따른 수
  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관할
  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